

#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E U

## EU위원회, Belgacom과 Telindus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Belgacom이 신고한 Telindus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조사를 마친 후, 이 기업결합이 EU연내 전체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Belgacom은 벨기에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도·소매 통신서비스, 유·무선 서비스,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뿐만 아니라 TV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Telindus는 벨기에에 위치한 국제적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자이다.

EU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사업 중에 수평적으로 중복되는 분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모든 상품들과 관련하여 각 부문에서 다수의

강력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Belgacom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통신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이는 Telindus가 통상 다른 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통합네트워크 솔루션을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Belgacom의 시장지배력을 강화 시킬 만한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EU 위원회는 발표하고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2005. 12. 1. EU위원회

## EU위원회, 16개 사업자들에게 담합혐의로 2억 9천 유로 벌금 부과

EU위원회는 산업용 플라스틱 백(bag) 제조업체 16사에 대해 카르텔을 한 혐의로 총 2억 9천 7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쟁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 및 지역 할당 담합을 했

으며, 대규모 고객들의 주문을 나누어 생산하고, 판매량에 관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고객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주는 동시에 경쟁을 제한했다. 이에 위원회는 벌금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담합 참가사업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용 플라스틱 백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주로 산업용 원료를 포장하는 데에 쓰이지만, 이 밖에도 비료, 농산물, 동물 사료 및 건축자재 등과 같은 소비재를 담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경쟁위원인 Neelie Kroes는 “카르텔은 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해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담합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2년 조사 및 그 이후의 지속적인 조사 후에, EU위원회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담합을 했음을 밝혀냈는데, 이들 중 몇몇 사업자들은 이미 독일,

베네룩스 국가들, 프랑스 및 스페인에서 20년 이상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카르텔 참가자들 중 하나인 British Polythene Industries(이하 BPI)가 신고해 옴에 따라 시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담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BPI는 카르텔 신고자에 대해선 처벌을 감면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처벌이 면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들의 회합에 참가하여 합의한 내용들도 밝혀냈는데, 예를 들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리더를 선정하기로 결정한다” 또는 “이러한 회합이 갖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장분할이나 가격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는 모두 폐기하기로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카르텔을 위한 회합이 존재했다는 것과 참가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번 담합 사건을 EU위원회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벌금 수준을 정하면서, 위원회는 당해 카르텔이 영향을 미친 시장의 규모, 담합 기간, 담합 참가자들의 업계에서의 비중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카르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들에게는 벌금을 감경해 주고, BPI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을 면제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자나 회사는 회원국의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할 때에는 EU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부과한 벌금과는 관계없이 산정될 수 있다.

2005. 11. 30. EU위원회

### 유럽위원회, Peugeot가 네덜란드로부터의 신차 수출을 방해한 것에 대해 4,950만 유로의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Automobiles Peugeot SA 및 Peugeot Nederland N.V.가 1997년부터 2003년에 걸쳐 네덜란드로부터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신차를 수출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여 4,950만 유로의 제재금을 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신차의 수출을 방해함으로써 동사는 제한적 상관행 금지(EC조약 제81조)의 중대한 위반을 범하였다.

Neelie Kroes 경쟁담당위원은 「본 결정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단일시장의 혜택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EC조약상의 경쟁률을 적용해 간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가계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은 2번째로 고액이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위는 특히 유해하다고 언급하였다.

1997년 1월부터 2003년 9월에 걸

쳐 Automobiles Peugeot SA는 100% 출자회사인 수입업자 Peugeot Nederland N.V.를 통해서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차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략을 실시하고, 그것에 의해 네덜란드의 Peugeot의 딜러에 의한 수출을 방해하였다.

동 전략은 2단계로 되어있다. 첫 번째는 Peugeot의 네덜란드의 딜러에게 지불되는 보수의 일부가 차량의 최종목적지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며, 외국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차별화하였다. 특히 만일 딜러가 차를 네덜란드인 이외에 판매한 경우, 업적수당의 지불이 거절되었다. 둘째로, Automobiles Peugeot SA는 Peugeot Nederland N.V.를 통해서 현저하게 수출을 늘렸다고 인정되는 딜러에 대해 그들에 대한 공급량을 줄인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한다고 하였고, 직접 압력을 가했다.

제재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럽위원회는 Automobiles Peugeot SA 및 그 네덜란드 자회사에 의한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것이라는 점 및 비교적 장기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세전 가격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좀더 낮았다. Automobiles Peugeot SA 및 수입업자 Peugeot Nederland N.V.에 대한 사건은 네덜란드에서보다 저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999년 9월 및 2003년 4월에 유럽 위원회가 행한 기습검사로부터 사건이 개시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소비자가 EU의 어느 곳에서라도 구매할 수 있는 자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유의 향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률에 따라 행동한다.

자동차 분야는 유럽위원회가 반년마다 공표하고 있는 최근 자동차 가격 보고서는 EU 지역내 세전 소매가격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렴은 물가가 낮은 나라들을 포함하여 상대적 가격 안정성을 배경으로 일어난다. 바꾸어 말하면 자동차 가격은 물가가 높은 나라의 물가수준 이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지는 않다.

2005. 10. 5. 유럽위원회 발표문

### 유럽제1심법원, Energias de Portugal 및 ENI에 의한 Gas de Portugal의 취득을 금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 지지

유럽위원회의 결정 중에 가스시장과 관련하여 많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전력시장에서 Energias de Portugal의 지배적지위가 강화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본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다.

제2차 가스 Directive(Directive 2003/55/EC)는 회원국에 있어서 가스시장의 자유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시장은 비거주 고객에게는 2004년 7월 1일까지, 그 외의 고객에게는 2007년 7월 1일까지는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특정 상황하에서 일정한 의무가 해제되고, Directive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포르투갈은 2007년까지 이 특례가 인정되었다. 포르투갈의 가스기업으로서 단독 사업자인 Gas de Portugal (GDP)은 가스공급망의 모든 거래단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4년 3월 31일 포르투갈의 전력회사인 Energias de Portugal (EDP) 및 이탈리아 에너지기업인 Eni SpA가 공동으로 GDP를 획득한다는 거래를 완료하였다.

2004년 12월 9일의 결정에 의해 유럽위원회는 본 집중은 공동체시장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합병 당사자는 경쟁상의 문제를 특정하고, 그 해소를 위해 스스로 중요한 협약을 제안하였으나, 유럽위원회는 본 집중이 행해진다면 EDP의 지배적지위가 포르투갈의 전력시장 모든 거래단계(도매, 소매 및 그것들에 부속하는 서비스시장)에서 강화되고, 또한 포르투갈의 가스시장의 대부분에 있어서 GDP의 지배적지위가 강화되어 공동체시장의 주요부분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5년 2월 25일 EDP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유럽제1심법원에 제소하였다. 유럽제1심법원은 신청자가 요구한 신속절차를 인정하고 이런 종

류의 사안으로는 가장 짧은 기간이 되는 7개월에 사안이 처리되었다.

유럽제1심법원은 포르투갈의 가스 시장은 결정이 행해진 시점에 경쟁의 개방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가스 Directive에 규정된 특례를 얻게 될 것이며, 실제 GDP는 모든 가스시장을 독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독점은 궁극적인 지배적지위이며, 이론상으로 그 이상 지위가 강화되어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집중에 의해 저해되어지는 유효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제1심법원은 본 집중의 금지의 근거를 가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지배적지위의 강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당해 시장은 특례에 의해 경쟁의 개방이 행해지지 않으며, 유럽위원회가 특례의 영향 및 범위를 경시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제1심법원은 이 실수는 가스시장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전력시장에 관한 평가에는 동 실수에 의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유럽제1심법원은 결정이 특히 관련 시장의 하나에 관하여 위법성에 의해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일부의 일부가 결정의 유효한 부분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면 본 집중을 금지한 결정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본 건에서는 유럽위원회는 집중에 의해 잠재적인 중요한 경쟁자(GDP)가 모든 전력시장으로부터 소

멀하게 된다고 판단했지만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는 그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는 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동 합병은 전력·가스 각 시장에 있어서 EDP의 지배적지위의 강화를 수반하게 되며, 그 결과 유효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이 결론 자체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유럽제1심법원은 EDP의 소를 각하하고,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2005. 9. 21. 유럽사법법원 발표문

## 미국

### 독점금지국,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한국 공정위 의결에 입장 밝혀

J. Bruce McDonald 독점금지국장 대행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 명령, 경쟁제품 탑재 및 윈도우메신저-MSN메신저 간 상호연동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독점금지국은 소비자들이 원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의 분리를 요구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본다. 독점금지국은 기능성을

앗아가는 “프로그램 분리” 명령이 궁극적으로는 혁신 및 이로부터 이익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고 본다. 우리는 이미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 대해 컨설팅을 한 바 있으며, 관계회사에 불필요한 제재를 하지 않는 균형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권장했다. 건전한 독점금지정책은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의 보호이어야 하며, 혁신이나 경쟁이 비록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감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경쟁당국의 판단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EU위원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결정을 했다. 그 이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디어 플레이어 코드를 제거한 유럽판 운영체제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타적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경쟁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 제조업체나 최종 이용자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나 윈도우즈 메신저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선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는 것은 금지되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판결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관행을 변화시켰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밀접한 공조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특히 상품들이 국경을 넘어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 연방법무부는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건전한 독점금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2005. 12. 7. 연방법무부

### FTC, 제약회사들간의 반경쟁적 합의에 대해 제소

연방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인 Galen Chemicals Ltd.(현재는 Warner Chilcott으로 알려져 있음)와 Barr Laboratories(이하 Barr) 사이의 협정을 파기하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염가의 약품인 Warner Chilcott의 Ovcon이라는 경구피임약을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Barr는 식품의약안전청의 승인을 받는 대로 Ovcon의 상표미등록(generic) 약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Warner Chilcott는 만일 이 약

품과 경쟁할 경우 1년 안에 Ovcon 판매량이 절반 정도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옴에 따라 Barr와 경쟁을 하는 대신에, Warner Chilcott는 향후 5년간 미국내 시장에서 Barr의 상표미등록 약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처럼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는 대가로, Warner Chilcott는 Barr에게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에 대해서 연방거래위원장인 Deborah Platt Majoras는 “Chilcott 와 Barr 사이의 이러한 합의는 결국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들간에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업자들이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0년 1월에 Warner Chilcott는 Bristol-Myers Squibb(이하 BMS)으로부터 경구피임약 브랜드인 Ovcon 35를 취득했다. 그리고 Ovcon은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기로 하고 있었다. 이를 넘겨받은 Galen은 2000년 아래 Ovcon의 판매량을 두 배 이상 늘려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자사의 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제품으로 부상했다.

2001년 9월 Barr는 Ovcon의 조제 및 판매의 승인을 식품의약안전청에 요청했다. 이 약품을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표품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2003년 1월에는 그 해 말에 이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Warner Chilcott의 입장에서 이러한 저렴한 경쟁상품의 등장은 자사에 대한 크나큰 위험으로 인식되었다. Barr가 판매하는 Ovcon이 출시되는 첫 해에 자사 제품의 판매량의 5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Warner Chilcott는 씹어 먹는 형태의 제품인 Ovcon Chewable을 Barr의 약품이 출시되기 전에 판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존의 Ovcon을 이용하던 소비자들로 하여금 Ovcon Chewable로 대체구매를하도록 하고 Ovcon은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었다. 소비자들이 약국에 가서 Ovcon Chewable에 대한 처방전을 가지고는 상표미등록 약품인 Barr의 Ovcon은 구매할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하려면 의사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Warner Chilcott은 자사의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Barr의 Ovcon 출시는 임박해진 반면, 자신의 Ovcon Chewable은 아직 식품의약안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전략은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Warner Chilcott은 2003년 9월에 Barr와 협정을 체결하여, Barr가

5년간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대신 2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간에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러한 수평적인 합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2005. 11. 7. 연방거래위원회

## FTC, Johnson & Johnson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방거래위원회는 Johnson & Johnson(이하 J&J)이 254억 달러에 달하는 Guidant Corporation(이하 Guidant)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세 개의 주요한 의료기구 시장에서 소비자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건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당사 회사들이 이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동의명령은 국내 3개의 주요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고 Susan Creighton 경쟁국장은 말했다. 또한 “이번 동의명령의 결과로써, J&J와 Guidant 간의 기업결합은 성사되는 동시에, 일부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튼법 제7조에 위반되어 3개의 관련시장에서 경

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관련시장은 시장력이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결합으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상쇄시킬 정도의 잠재적 진입의 가능성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연방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3개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기업결합은 허용하기로 했다(관련 내용은 이하의 일본 사례 참조).

2005. 11. 2. 연방거래위원회

## 독일

### 연방카르텔청, Berliner Verlag 주식인수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Veronis Suhler Stevenson International Ltd.(이하 VSS)와 Mecom Group plc. (이하 Mecom)가 출판업체인 Berliner Verlag GmbH & Co.KG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구독 일간지 시장 및 가판 일간지 시장, 특정 도시 등 한정된 지역의 독자들에게 읽히는 잡지(city magazine) 시장 그리고 베를린 지역 내 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Ulf Boge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의 형성이나

강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VSS나 Mecom은 모두 위와 관련된 시장들에서는 직접적으로나 계열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나 활동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언론·출판·미디어 그룹인 Holtzbrinck도 이 주식들을 다시 사들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이번 기업결합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

2005. 11. 25. 연방카르텔청

### 연방카르텔청, 신문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에 부정적

연방카르텔청은 Axel Springer AG(이하 Springer)와 ProSieben-Sat.1 Media AG(이하 ProSieben-Sat.1)의 기업결합이 경쟁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업결합은 TV 광고 시장, 가판용 신문 시장 및 독일 내 신문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보고 있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장은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기업결합은 국제적으로 유력한 미디어 사업자이기도 한 독일내 최대 신문업자와 TV 사업자인 ProSiebenSat.1과의 기업결합은 이와 관련된 3개 시장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력을 발생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의 발표에 의하면, ProSiebenSat.1과 RTL 그룹은 모

두 Betelsmann 그룹에 속해 있으며, 이들의 TV 광고 시장에서의 결합 시장점유율은 약 80%로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제3자와의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이른바 “반경쟁적인 복점”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업결합은 인접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시장과 잡지 시장에서 두 기업집단의 구조를 동화시킴으로써, Springer/ProSiebenSat.1 그룹과 Bertelsmann 그룹간의 동조를 더욱 견고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복점을 지속시키는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또한 독일내 가판 신문 시장에서 Springer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에서 Springer의 일간지 BILD는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 기업결합은 독일내 신문광고 시장에서 Springer의 시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Springer는 자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BILD와 Welt를 통하여 신문광고 시장에서 4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pringer가 방송 시장에서의 광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광고 시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기업결합 당시회사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연방카르텔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카르텔청은 이를 고려하

여 올 해 말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05. 11. 21. 연방카르텔청

## 일 본

### 야후(주) 및 신와 아트 옥션(주)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재무성이 2005년 7월에 발주한 일반회계로 보유하는 근대 금화의 매각 업무와 관련한 인터넷 옥션 및 공개 옥션의 운영보조업무에 대한 야후 주식회사(이하 야후) 및 신와 아트 옥션 주식회사(이하 신와 아트)의 응찰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6항(부당염가판매)에 해당)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조치 했다.

야후는 인터넷 옥션 운영보조업무의 일반경쟁 입찰에서 해당 업무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하게 밀도는 가격인 1엔으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음으로써, 재무성이 2006년도 이후 발주하는 근대 금화의 매각 업무와 관련된 인터넷 옥션 운영보조업무 등의 입찰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되었다.

한편 신와 아트 역시 공개 옥션 운영보조업무의 일반경쟁 입찰에서 해

당 업무의 공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현저하게 밀도는 가격(1엔)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재무성이 향후 발주하는 근대 금화의 매각업무와 관련된 공개 옥션의 운영보조업무 등의 입찰에 있어서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야후 및 신와 아트에 대해 향후 이러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2005. 12. 9. 공정취인위원회

### Johnson&Johnson에 의한 Guidant Corp.의 주식취득 인정

공정취인위원회는 Johnson & Johnson(이하 미국 존슨)에 의한 Guidant Corporation(이하 미국 가이단트)의 주식 취득이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과 관련되는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당사회사가 예정되어 있는 조치를 확실히 이행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됨에 따라서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공정취인 위원회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 및 EU위원회도 같

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양 경쟁당국과 정보교환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시켜 왔다. 이에 EU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에, FTC는 11월 2일에 문제 해소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취득이 경쟁법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각각 공표했다.

이 사건은 미국 가이단트의 주주의 승인 및 그 외 수속의 완료를 전제로 하여, 2006년에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자인 미국 존슨이 같은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자인 미국 가이단트의 전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양 당사회사는 세계 각지에서 의료기기의 판매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당사회사의 일본 법인 및 의료기기 수입 판매업자를 통해서 이들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양 당사회사가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기에는 심장 관동맥 질환과 관련되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그 외의 혈관 질환과 관련되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원인이 되는 심장 관동맥 질환(혈관내에 콜레스테롤 등이 축적하는 것으로써, 심장 관동맥의 일부가 협착해 심근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증상)과 관련되는 치료 방법에는, 심장 관동맥의 협착부에 카테터를 통해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인 「경피적 관동맥 형성방법」(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

plasty ; 이하 PTCA)과 협착이 생기고 있는 심장 관동맥을 대신해 다른 혈관을 해당 환부에 이식하는 수술인 「심장 관동맥 단락 우회 수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 이하 CABG)이 있다.

또한 경동맥, 신장동맥, 장골동맥 및 대퇴동맥 등의 심장 관동맥 이외의 말초 혈관의 협착과 관련된 치료에는, 말초 혈관의 협착부에 카테터를 통해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인 「경피적 혈관 형성방법」(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 이하 PTA)을 하고 있다.

관련시장 확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치료방법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그 사용자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기능·효용이 동종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 시장에 있어서의 12 종류의 각 의료기기의 제품 분야를 각각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일정한 거래 분야로 확정했다. 이에는 PTCA용 가이딘그카테이텔, PTCA용 가이드 와이어, PTCA용 벌룬 카테터, PTCA 용 약제용출스텐트(Drug Eluting Stent; 이하 DES), PTCA용 스텐트 (Bare Metal Stent; 이하 BMS), CABG용 내시경 하혈관채취 시스템 (Endoscopic Vessel Harvesting System; 이하 EVH 기기), CABG 용 스태빌라이저, PTA용 가이딘그카테이텔, PTA용 가이드 와이어, PTA 용 벌룬 카테터, PTA용 스텐트, 하대 정맥 필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시장 규모를 보면, 작년 일본 의료기기 전체의 시장규모는 약 2조 600억엔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 의료기기의 시장규모는 의료기기 전체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TCA용 의료기기(가이딘그카테이텔, 가이드 와이어, 벌룬 카테터, DES 및 BMS)는 1,000억엔, CABG 용 의료기기(EVH 기기 및 스태빌라이저)는 약 5억엔, 그리고 PTA용 의료기기(가이딘그카테이텔, 가이드 와이어, 벌룬 카테터, 스텐트 및 하대정맥 필터)는 약 185억엔 규모이다.

위 12개의 거래 분야 가운데, DES 및 EVH 기기를 제외한 10의 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을 했다고 해도 즉시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DES 시장에서는 미국 존슨이 제조하는 DES만이 후생 노동성의 승인을 얻어 판매되고 있어 현재 미국 존슨이 유일한 DES의 공급자이지만, 다른 경쟁사업자가 DES의 판매를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이 회사의 제품은 미국 가이단트의 제품보다 빠른 시기에 일본 DES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 존슨에 대해 미국 가이단트 보다도 더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가 복수 존재하고 있어, 시장진입 시

기는 다소 늦더라도 머지않아 DES 시장에 참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규참가자들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 주식취득을 한다고 해도 잠재적 진입자들의 참가 후에는 DES 분야에 있어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EVH 기기 시장에서는 미국 존슨 및 미국 가이단트가 제조하는 EVH 기기만이 판매되고 있다. 올해 10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1사가 새롭게 EVH 기기 시장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현재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주식취득에 의해서 일본 EVH 기기의 시장은 결합기업이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게 될 우려가 있다. FTC 및 EU위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당사 회사는 미국 존슨의 자회사가 소유하는 EVH 기기 사업의 전세계 전용의 제조 부문 및 판매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경쟁당국들과 합의하고 이미 미국의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회사의 EVH 기기 사업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주식취득은 일본 EVH 기기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5. 12. 9. 공정취인위원회